KOSHA GUIDE

C - 10 - 2016

- (5) 추진코(Nose) 및 강제 거푸집 등은 반입해서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가 구조적 안전성 및 부재의 결함·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장비의 반입·반출 등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
5. 가시설물 제작 및 설치 안전작업

5.1 제작장

5.1.1 작업개요

세그먼트(Segement) 길이 2~3배(1개 스판 50%)의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 위에 가설교각, 압출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



<그림 4> 주형 제작장

5.1.2 작업시 준수사항

- (1) 주형 제작장의 위치는 설계단계에서 압출진행방향, 인접한 도로상황, 추진 코 및 경간의 길이, 제작장의 길이, 주형의 전도에 대한 안전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한다.
- (2) 제작장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3) 절토사면은 필요시 부석의 낙하나 미끄러짐(Sliding) 방지를 위하여 사면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.